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의성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1. 7.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치		재 정 상 조 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14건	5	9	0	0	0	0	2	175,063
1	○ ○ 과	직급별 정·현원관리 소홀 및 결원의 신속 보충 미이행		1						
2	○ ○ 과	축사 건축신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홀	1							
3	○ ○ 과	공장설립 미승인 건축물 인허가 처리	1							
4	해 당 읍 면	농업법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1						
5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및 단위단가 산정 소홀	1						1	173,063
6	○○○○○과	●●● ●●● 위탁운영 부적정		1						
7	○ ○ 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1						
8	○ ○ 과 ●●●●●과 ◇ ◇ ◇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1						
9	○ ○ 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1						
10	○ ○ 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목적 농지전용 허가 부적정	1							
11	○ ○ ○ ○ 과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1						1	2,000
12	○ ○ 과	지붕위 전기(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1						
13	○ ○ 과	●●● ●●● ●●● ●●공사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1						
14	○ ○ 과	공동주택 건축허가 부적정		1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급별 정·현원관리 소홀 및 결원의 신속 보충 미이행**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의성군 ○○과에서는 2018. 1. 1.부터 2021. 4. 28. 감사일 현재까지 직렬별 승진예정 직급을 임용권자가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해당직렬의 승진심사를 사전의결 요청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다.

1. 직급별 정·현원 관리 소홀

「지방공무원법」제7조 및 제8조 제39조, 「지방공무원임용령」제8조의2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하나의 직급이나 직위에 임용하도록 보직관리 하여야 하며,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과 6급 이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제8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제9조의4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경미한 경우(①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②자진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③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밖의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심사 ④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⑤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심의 ⑥민간 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연장 승인 ⑦우대승진임용 및 근속승진임용 ⑧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를 제외한 사항은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성군 ○○과에서는 2018. 1. 1.부터 2021. 4. 28. 감사일 현재까지 직급별로 정·현원을 관리하여 해당직급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임용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을 거쳐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성군 ○○과에서는 2018. 1. 1.부터 2021. 4. 28. 감사일 현재까지 직급별 정·현원을 관리하지 않고, 매번 정기인사마다 특정기준일(예:2018. 1. 1., 2018. 7. 1.)에 계급별 결원 개수를 산정하여 계급별로 산정된 승진예정 개수만큼 직렬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에 사전의결 요구하지 않고 인사부서의 보고자료에 따라 임용권자가 승진예정 직급을 결정하거나 승진후속의 결원을 승진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여 인사위원회에 승진임용 사전심의를 요청하였다.

그 결과 2020. 7. 22. 정기인사 승진예정 직급 결원을 결정하며 2020. 5. 23. 5급으로 승진한 ●●6급 AAA, ◇◇◇◇6급 BBB, ◆◆6급 CCC 승진후속 결원을 승진예정 직급 결원으로 산정하지 않아 당시 직렬의 승진후보자 명부(●●7급 DDD 외 45명, ◇◇◇◇ 7급 EEE 외 14명, ◆◆7급 FFF 외 12명)에 직급별 승진 예정자들이 등록되어 있음에도 6급 3명을 승진시키지 못하였다.

2. 결원의 신속 보충 미이행

「지방공무원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해당기관에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결원 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무원의 결원을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또는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성군 ○○과에서는 2020. 6. 30. □□6급 GGG의 명예퇴직에 따라 □□6급 결원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결원보충방법에 따라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성군 ○○과에서는 2020. 6. 30. □□6급 GGG가 명예퇴직함에 따라 발생한 □□6급 결원에 □□7급 HHH(2014. 11. 05. 임용)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었음에도(□□7급 JJJ, 승진의결 당시 육아휴직 중) ●●, ◇◇◇◇, ■■ 직렬의 경우 11년 이상 근무자가 승진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직렬간의 승진 형평성을 고려하여 □□7급 HHH를 승진시키지 않는 등 결원보충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또한 2020. 6. 30. □□6급 결원을 2021. 1. 1. 정기인사시 6급 승진예정 요인으로 반영하여 알 수 없는 직렬(직급별 결원을 관리 하지 않음)을 6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결원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축사 건축신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소홀**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의성군 ○○과에서는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신고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 업무를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1.에 의거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0,000㎡ 이상이고,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가 10년 이내에 승인등을 받은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다음 각 목[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받은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이상이고,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의 30퍼센트[2]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

1) ① 사업자와 「은행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동일인(시장·군수·구청장이 사업자인 경우로서 이미 승인등을 받은 지역과 추가로 승인등을 받으려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된 목적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1호에 따른 필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사업의 주된 목적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③「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분할되기 전의 필지가 사업자가 승인등을 받은 필지를 포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

2) 농림지역 최소 대상면적 7,500㎡ × 30% = 2,250㎡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와 동일한 필지에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가 승인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의 합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 이상인 경우 이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성군 ○○과에서는 2017. 11. 24. ◎◎면 ◇◇리 ㄱ 외 2필지(LLL)와 ◎◎면 ◇◇리 ㄱ 외 1필지(MMM) 그리고 2018. 11. 8. ◎◎면 ◆◆리 ㄴ번지(KKK)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신고에 대한 협의 시,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검토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를 확인하여 협의 회신하여야 했다.

[표 1]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신고 내역

(단위 : ㎡)

협 의 요청일	건축주	건축 소재지	사업면적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	협의내용	비 고
2017. 11. 24	LLL	◎◎면 ◆◆리 ㄷ, ㄹ, **ㄱ**	9,528 (2,676+1,194 +**5,658**)	2,292	**조건부허가** 1.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상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 2. 다만, 첨부된 토지 분할 예정선을 반드시 준수하고, 분할 후 사업계획면적이 각각 10,000㎡ 이하이고, 각각의 필지별 이격거리가 50m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계획관리지역 : 사업계획면적 10,000㎡ 이상인 경우 대상임	계획 관리 지역
2017. 11. 24	MMM	◎◎면 ◇◇리 ㄹ, **ㄱ**	8,930 (3,410+**5,520**)	2,430	**조건부허가** 1.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상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임 2. 다만, 첨부된 토지 분할 예정선을 반드시 준수하고, 분할 후 사업계획면적이 각각 10,000㎡ 이하이고, 각각의 필지별 이격거리가 50m 이상이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계획관리지역 : 사업계획면적 10,000㎡ 이상인 경우 대상임	계획 관리 지역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2017. 11. 24. 제출 받은 LLL과 MMM의 건축신고를 검토하는 과정에 동일한 필지(◎◎면 ◇◇리 ㄱ번지)에 동일한 사업(축사)을 확인 할 수 있었음에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11의2에 따라 사업자가 승인등을 신청한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3] 이내의

지역에서 해당 사업자가 그 승인등을 받기 전에 사업자(LLL 9,528㎡)가 승인등을 신청한 필지와 동일한 필지에서 동일한 사업의 승인등을 받으려는 자(MMM 8,930㎡)에 대해서는 이미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과 추가로 승인등을 신청한 면적을 합산(총 18,458㎡)하여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면적(계획관리지역 10,000㎡)을 초과하였는데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을 통보하지 않았다.

[표 2]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신고 내역

(단위 : ㎡)

협 의 요청일	건축주	건축 소재지	사업면적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면적	협의내용	비 고
2017. 12. 6	RRR	◎◎면 ◆◆리 ㅁ, ㅂ	7,441 (5,083+2,358)	3,629.85	**협의대상아님** 1. 사업계획면적 3,464.25㎡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기준 규모미만으로 제외대상임 2. 대상사업기준 : 사업면적 7,500㎡ 이상(농림지역)	2017. 11. 27. ㅁ번에서 분할되어 ㄴ부함 농림지역
2018. 11. 8	KKK	◎◎면 ◆◆리 ㄴ	2,600	893.92	**협의대상아님**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하여 승인 받으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 기준 규모미만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이 아님	2017. 11. 27. ㅁ번에서 분할 농림지역

그리고 위 부서에서는 위 [표 2]와 같이 ◎◎면 ◆◆리 ㄴ번지(KKK) 건축신고에 대해 해당 사업부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10년 이내 최초로 승인 등을 받은 사업자(◆◆리 ㅁ번지, 건축주 RRR)와의 관련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두 사업의 사업자의 「은행법」상 동일인 관계 해당여부와 해당 필지 분할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확인결과, 「은행법」상 동일인 미해당, 필지 분할 3년 이내) 하였으나, 추가로 승인 등을 받으려는 면적이 최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최소 대상면적은 2,250㎡, 신청

3) ◎◎면 ◇◇리 ㄱ번지 LLL과 MMM의 건축 분할 예정선은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약 46.9M~50M이내

면적은 2,600㎡)인지를 검토하지 않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여부를 협의 대상이 아님이라고 회신하였다.

그 결과 축사 건축 신고를 수리 받은 건축주 LLL, MMM, KKK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는 특혜[4]와 의성군 ●●●●●과-2519(2017.1.25.)에 의해 시행된 제3단계 오염총량관리 세부추진계획[5]에 의거 위 3건의 건축신고 수리 자체가 불가했음에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축사 건축신고가 승인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비용 절감, 환경영향평가 협의(자연생태환경, 수질, 대기질, 토지이용, 경관, 친환경적 자원순환 등에 대한 제한)사항 미이행 및 이에 따른 건축 신고 수리기간 단축 등

5) 2017.2.1.~2020.12.31.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할당 제한(가축사육·처리시설 5,000㎡, 지역구분 5,000~10,000㎡ 이상), ●●●●●과-2544(2017.1.25. 홈페이지 고시공고)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장설립 미승인 건축물 인허가 처리**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의성군 ○○과에서는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의제협의 부서와 허가 협의하여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건축법」 제11조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와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성군 ○○과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를 초과할 경우 공장건축물에 관하여 공장등록 업무담당자와 의제 협의 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성군 ○○과에서는 2020. 6. 23. 민원인 PPP, QQQ가 공동 명의로 아래 [표 1]과 같이 건축(증축)을 신청하였는데 서로 다른 날짜에 서로 다른 명의의 사람이 신청한 아래 [표 2]와 동일 건축물로 볼 수 없고, PPP, QQQ의 공동명의 건축(증축)신청은 구내식당이 제조업소의 부속건물로 제조업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공장등록 업무담당자에게 의제 협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1] ●●면 ◎◎리 ㅅ 건축허가 신청 내역

구분	건축주	건축 소재지	건축면적(㎡)			용 도	비 고
			합계	기존	증축		
당초 2020. 6.23.	PPP, QQQ	●●면 ◎◎리 ㅅ	531.23	196.16 (제조업소)	335.07 303.47(제조업소) 31.6(제조업소- 식당)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제조업소-식당)	건축허가 완료
변경 2021. 3.23	PPP	●●면 ◎◎리 ㅅ	530.87	194.34 (제조업소)	336.53 304.93(제조업소) 31.6(일반음식점)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일반음식점)	사용승인 신청 전 제조업소-식당을 → 일반음식점으로 변경시킴

[표 2] ●●면 ◎◎리 ㅈ 건축허가 신청 내역

구분	건축주	건축 소재지	건축면적(㎡)			용 도	비 고
			합계	기존	증축		
당초 2020. 7.3.	PPP	●●면 ◎◎리 ㅈ	498.7	197 (제조업소)	301.93 (제조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건축허가 완료

그 결과 민원인 PPP는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 등을 받지 않고 2021. 4. 8. 아래 [표 3]과 같이 두 개의 건축물을 합산하여 732.72㎡을 식품제조 영업장으로 의성군 ◇◇◇에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등록을 하게 되었다.

[표 3] ◆◆◆◆◆◆(PPP)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현황

변경 신고일	영업소명칭	대표자	소재지	영업장면적(㎡)			영업의종류	비 고
				합계	기존	증축		
2021.4.8.	◆◆◆◆◆◆	PPP	●●면 ◎◎리 ㅈ, ㅅ	732.72	327.94	404.78	식품제조·가공업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업법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해당 읍·면
내 용	

의성군 11개 읍·면(●●●, ◎◎◎, ◇◇◇, ◆◆◆, □□□, ■■■, △△△, ▲▲▲, ▽▽▽, ▼▼▼, ☆☆☆)은 「농지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접수하고 취득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농업법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이하 “예규”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첨부서류 등을 심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되,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예규 제8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서 정한 사업범위 및 부대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 전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에 따라 농업법인이 사업범위 및 부대사업의 범위[6]

6) ① 영농조합법인 : 1.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2.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3. 농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4. 농작업의 대행 5.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6. 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이하 “사업범위”라 한다)를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군수가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11개 읍·면에서는 농업법인 등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심사 확인하여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2018년부터 현재까지 11개 읍·면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농업법인 등의 등기사항증명서상에서 “부동산 임대업, 태양광 발전 판매업,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등” 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이 기재되어 있고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 해산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관련서류 심사 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상기 농업법인 등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어 12개 농업법인 등에게 농지 40필지 77,690.7㎡를 위법하게 소유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다.

[표 1] 농업법인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내역

연번	발급기관	발급일자	법인명	발급내역		부적정 사업범위	비고 (소유권 변동여부)
				소재지	면적(㎡)		
합계	11개읍면		12개	40필지	77,690.7		
1	■■■	2020-08-11	-	-	557	일반법인으로 농업법인이 아님	부
2	■■■	2020-08-11	-	-	200	일반법인으로 농업법인이 아님	부
3	◇◇◇	2019-01-24	-	-	1,491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및 전기 판매업	2019.10.18. 개인에게 농지전용으로 매매
4	◇◇◇	2019-01-24	-	-	1,775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및 전기 판매업	2019.10.18. 개인에게 농지전용으로 매매
5	◇◇◇	2019-01-24	-	-	1,940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및 전기 판매업	2019.10.18. 개인에게 농지전용으로 매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② 농업회사법인 : 1.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2.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3.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4.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5. 소규모 관개시설(灌溉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연번	발급기관	발급일자	법인명	발급내역		부적정 사업범위	비고 (소유권 변동여부)
				소재지	면적(㎡)		
6	◇◇◇	2019-01-24	-	-	2,797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및 전기 판매업	2019.10.18. 개인에게 농지전용으로 매매
7	◇◇◇	2019-01-24	-	-	1,947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및 전기 판매업	2019.10.18. 개인에게 농지전용으로 매매
8	◇◇◇	2019-01-24	-	-	5,114	태양광 발전 전기사업 및 전기 판매업	2019.10.18. 개인에게 농지전용으로 매매
9	■■■	2018-03-09	-	-	1,147	저온창고 제작판매 및 설치업	부
10	■■■	2018-03-09	-	-	231	저온창고 제작판매 및 설치업	부
11	□□□	2018-12-19	-	-	1,699	부동산 임대업 등	2021.4.14. 법원에 가압류중
12	□□□	2018-12-19	-	-	2,109	부동산 임대업 등	2021.3.19. 개인 5인에게 농지전용으로 매매
13	□□□	2019-03-07	-	-	1,667	부동산 임대업 등	2021.3.19. 개인 5인에게 농지전용으로 매매
14	◇◇◇	2019-02-27	-	-	10,804	부동산 임대업 등	부
15	◇◇◇	2019-02-27	-	-	1,241	부동산 임대업 등	2019.4.4. 개인에게 주말체험영농으로 매매
16	◇◇◇	2019-02-27	-	-	2,450	부동산 임대업 등	2019.4.4. 개인에게 주말체험영농으로 매매
17	◇◇◇	2019-02-27	-	-	255	부동산 임대업 등	2019.4.4. 개인에게 주말체험영농으로 매매
18	▼▼▼	2018-12-19	-	-	1,739	부동산 임대업 등	2021.4.14. 법원에 가압류중
19	▼▼▼	2018-12-19	-	-	5,564	부동산 임대업 등	2021.4.14. 법원에 가압류중
20	▽▽▽	2020-01-08	-	-	1,557	축산관련 시설물 임대업	부
21	△△△	2019-07-26	-	-	2,664	부동산 임대사업	부
22	●●●	2019-07-31	-	-	337	부동산 임대사업	부
23	△△△	2019-01-24	-	-	2,721	농업관련시설 및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부

연번	발급기관	발급일자	법인명	발급내역		부적정 사업범위	비고 (소유권 변동여부)
				소재지	면적(㎡)		
24	△△△	2019-01-24	-	-	1,331.1	농업관련시설 및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부
25	☆☆☆	2019-01-24	-	-	939	농업관련시설 및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부
26	☆☆☆	2019-01-24	-	-	1,045	농업관련시설 및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부
27	☆☆☆	2019-01-24	-	-	936	농업관련시설 및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부
28	☆☆☆	2019-01-24	-	-	648	농업관련시설 및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부
29	☆☆☆	2019-01-24	-	-	1,164	농업관련시설 및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부
30	☆☆☆	2019-01-24	-	-	3,369	농업관련시설 및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부
31	☆☆☆	2019-01-24	-	-	1,715	농업관련시설 및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부
32	☆☆☆	2019-01-24	-	-	2,833	농업관련시설 및 농업관련 부동산 임대업	부
33	△△△	2018-08-27	-	-	757.6	★★★★ ★★의 재산관리 및 소득증대사업	부
34	◇◇◇	2019-05-13	-	-	1,418	신재생에너지의 연구, 교육 및 판매	2019.7.12. 농업법인에서 농지전용 후 일반주택 건축
35	▲▲▲	2018-08-07	-	-	202	태양광발전 사업 등	2018.4.6. 농업법인에서 농지전용 후 태양광발전사업
36	◆◆◆	2018-07-16	-	-	40	화물, 운송 사업 등	부
37	◆◆◆	2018-07-16	-	-	124	화물, 운송 사업 등	부
38	◆◆◆	2018-07-16	-	-	2,060	화물, 운송 사업 등	부
39	◆◆◆	2018-07-16	-	-	3,242	화물, 운송 사업 등	부
40	◎◎◎	2020-01-13	-	-	3,861	◁◁◁◁◁◁은 농업생산자단체이지 농업법인이 아님	2020.9.18. ◁◁에서 육묘장 및 창고 시설로 농지이용

※ 의성군 자료 재구성

2. 농지전용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농지법」 제6조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나,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이하 “예규”라 한다) 제4조 제4호에 따르면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해당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예규 제7조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예규 제8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르면 읍면장은 신청인이 전용목적 사업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제4조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심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 자격증명을 발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농지전용을 목적으로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에 대해 농지전용을 입증하는 서류[7]를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여야 했음에도, 신청자가 제출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 표지(핸드폰 사진 촬영물) 출력물만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농지전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적정하게 발급하였다.

7) 농지전용 협의 통보문, 농지전용신고증

[표 2] 농지전용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연번	발급 기관	접수 및 발급 일자	신청인		발급내역			농지전용자 및 신청일	비고
			성명	주소	읍면	지번	면적(㎡)		
합계			3명			8필지	20,996		
1	◇◇◇	19.10.15. 19.10.15.	SSS	-	◇◇◇ ♤♤리	ㄱ	1,947	VV, ZZZ 2019.11.13	농지취득접수시 농지전용필지가 아님
2						ㄴ	5,114	VV, ZZZ 2019.11.13	농지취득접수시 농지전용필지가 아님
3			TTT	-		ㄷ	3,266	AB, SSS 2019.8 8.	
4						ㄹ	4,737	AB, SSS 2019.8 8	
5			UUU	-		ㅁ	417	AC, AB, AD 2019.8 8	
6						ㅂ	2,149	AC, AB, AD 2019.8 8	
7						ㅅ	136	AC, AB, AD 2019.8 8	농지전용필지가 아님
8						ㅈ	3,230	AC, AB, AD 2019.8 8	

또한 위 [표 2]와 같이 신청한 3필지(◇◇◇ ♤♤리 ㅅ, ㄱ, 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당시 농지전용 신청 자체를 한 사실이 없는 필지임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였다.

그 결과 적법하게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3명에게 농지 8필지 20,996㎡를 농지법에 위반하여 소유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및 단위단가 산정 소홀**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의성군 ○○○○○○○에서는 하수도법 및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하고 있다.

1.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하수도법」 제34조 및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 · 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4조 및 「의성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오수발생량(㎥/일)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하고, 납입기한은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 승인 시에 완공예정일(임시사용 승인일 포함) 전일까지로 정하여 고지하며, 준공검사필증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에 따르면 부과권자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에게 부담금 부과의 법적 근거, 납부금액, 산출근거, 납부방법 및 미납 시의 조치사항 등을 미리 알리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성군 ○○○○○○○○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담금 부과의 법적근거, 금액, 납부방법 등을 고지하고, 원인자부담금을 부과,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징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표]와 같이 ●●●●●에 공용건축물 건축에 따른 의제협의 회신하면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건축물 준공 예정일 예측이 불가하다는 이유와 ◎◎◎ ◎◎◎의 경우 협의 이후 당해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의 인·허가 승인시점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 2021. 4. 29. 감사일 현재까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3,063,470원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미부과 현황

연번	대상명	주소	부담금액(원)	건축허가일	사용승인일	비고
1	◇◇◇◇◇◇◇◇	-	24,326,670	2018.4.26.	2018.12.23.	미부과 미납부
2	◎◎◎ ◎◎◎	-	148,736,800	2018.9.10.	2021.3.24.	미부과 미납부

2.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 소홀

「하수도법」 제61조 및 「의성군 하수도 사용조례」제14조에 따르면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가 하루에 10㎥ 이상으로 증가되는 경우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사업비 / 시설용량) ×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수(α)’ 계산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성군 ○○○○○○○○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출기준이 되는 단위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공공하수도 설치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의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산정 후 군보 등에 공고절차를 이행하고 적정한 부담금을 부과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을 통해 2014. 4. 28.(의성군 공고 제2014-292호) 단위단가 1㎥당 2,191,000원을 의성군 홈페이지에 공고 이후 7년 동안(2015년 ~ 2021년) 재산정 없이 2014년 당시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미부과된 ◎◎◎ ◎◎◎ 및 ◇◇◇◇◇◇◇◇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납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위탁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의성군 ○○○○○과에서는 [표 1]과 같이 의성군 ◎◎면 ◇◇◇ ㄱ 일원의 ●●●(◆◆◆, □□□□□ 등)의 관리에 대한 위탁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 1] ●●● ●●● 내 시설의 위·수탁운영 계약체결 현황

대상	대지면적 (건축면적)	시설현황	위탁사무	계약방법	계약기간	수탁자 (대표자)
●●● (전체)	32,554㎡ (1,629㎡)	-	■■■■■■■■ 시설관리·운영 전반	공고 (홈페이지)	'20.1.01.~ '20.12.31.(1년)	㈜△△△△△
◆◆◆	464.85㎡ 중 260㎡	-	◆◆◆ 운영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20.7.15.~ '23.7.14.(3년)	▲▲
●●● □□□□□	8,215㎡ (134.41㎡)	-	□□□□□ 운영	일반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계약일로부터 2년 (진행중)	㈜▽▽▽▽▽ ▽▽

1. ●●● 관리수탁자 선정방법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 <별표4>“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세부 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차단체의 장은 위탁료 산정을 위해 관리위탁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원가분석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고,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에는 최고가낙찰로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기 위해서는 관리위탁 계획 수립을 통해 수입·지출의 원가를 계산하여 위탁료를 산정한 후, 수입 또는 지출에 따라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한 일반입찰을 하여야 한다.

한편 의성군 ○○○○○○에서는 2019. 4월 “의성군 ■■■■■■■■ 민간위탁 공모 계획”을 수립하고 원가분석의 결과에 따라 지정정보장치를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원가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간지, 군 홈페이지 게재, 전국 시군구 공고를 통하여 공모함에 따라 4개 업체(△△△△△, ▼▼▼▼▼▼▼▼▼▼, ☆☆☆☆☆☆☆☆☆☆, ★★★★★)에서 신청하였고, 사업계획서를 받고 원가분석을 용역을 통해 손익 계산 절차를 거치고 2019. 5. 8. 민간위탁운영자 선정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자 선정 후, 2020. 1. 6. ㈜△△△△△와 위·수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관련 위·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활용하지 않았고, 사전에 원가분석 절차를 거치지 않아 낙찰 금액도 명시되지 않은 계약이 진행되었다.

2. ●●● 내 시설 이용료 징수 관련 조례 미제정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44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성군 ○○○○○○○에서는 「의성군 ♡♡♡♡♡♡♡♡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2018. 12월 제정 후 ●●● 입장료 및 □□□□□ 이용료 등 시설 이용료에 관한 조항를 마련하지 아니한 채 2020. 1. 6. 의성 ●●● 민간위탁 운영자 ㈜△△△△△와 ●●● 관리운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탁자 ㈜△△△△△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용객에게 [표 2]와 같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표 2] 의성 ●●● 시설 사용료 현황

입장료				오토 캠핑장	수영장				쉼터	
사람		반려견			사람		반려견		대형	소형
성인	소인	중소형견	대형견	45,000	성인	소인	대형견	중소형견	50,000	30,000
5,000	3,000	3,000	5,000		5,000	3,000	4,0000	20,000		

그 결과 의성 ●●●에서는 조례에 명시된 규정 없이 81,076천 원(2020년 78,613천 원, 2021년 2,463천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다.

3. ◆◆◆ 관리위탁 관련 제안서 평가 배점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계약이행능력에 대해 사업수행계획 및 재무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르면 제안서 평가의 경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과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목적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의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 작성 시 정량평가 분야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30점, 정성평가분야는 최저 50점, 최고 70점, 입찰가격은 최저 10점에서 최고 30점의 배점을 부여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제안서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미준수하여 [표 3]과 같이 정성평가 분야의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배점을 부여하고, 잘못된 평가기준으로 제안서를 평가를 하였다.

[표 3]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합 계				100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 분야 (15점)	사업 수행 능력	-	5
			-	5
			-	5
	정성적 평가 분야 (75점)	운영 및 관리계획	-	35
		메뉴·가격	-	15
		고객 서비스	-	15
		위생·안전관리	-	10
입찰가격평가(10점)	입찰 가격	※ 평점산식에 의거 산출		10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
내 용	

의성군 ○○과와 ●●●●●●●●에서는 각종 인쇄출판물 제작과 공공기관 홍보영상 제작 등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성군 ○○과와 ●●●●●●●●에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각종 인쇄출판물 제작 및 공공기관 홍보영상 제작에 대하여는 그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직접생산확인 조회 등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의성군 ○○과와 ●●●●●●●●에서는 직접생산능력이 없는 사업자와 아래 [표]와 같이 4건 74,010천 원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소지 업체 계약 내역

계약명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 (천 원)	비고
합 계			74,010	
◎◎◎◎ ◎◎◎◎◎◎ ◎◎영상 ◎◎◎◎◎ 제작	■■■■■	2019. 3. 4.	20,680	본청
◇◇◇◇◇ ◇◇ 홍보영상 제작 용역	■■■■■	2019. 7. 1.	20,680	본청
◆◆◆◆ ◆◆◆◆ ◆◆영상 홍보물 제작	㈜△△△△△	2020. 5. 14.	20,680	본청
□□□□□ □□□□□ □□ □□ □□ 제작 구입	▲▲▲▲▲	2019. 10. 31.	11,970	●●●●●●●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분할 수의계약 부적정**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과, ◇◇◇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1억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의 전문공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87.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의 용역·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동일 구조물 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구조별·공종별로 공사량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며,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도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추정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아 경쟁하여야 하고, 추정가격을 2천만 원 이하로 임의로 분할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 진입도로 포장·정비공사의 경우

의성군 ●●●●●과에서는 ◎◎ ◎◎◎ 일원의 진입도로에 대하여 도로 절삭 후 포장 및 차선도색을 위한 "◇◇ ◇◇◇ ◇◇◇◇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당초 1건의 사업으로 계획된 상기 공사의 설계도서를 ☆☆ ☆☆ ☆ ☆☆에 대한 "◇◇ ◇◇◇ ◇◇◇◇ ◇◇공사"와 ★★ ★★ ★ ★★★★★ ★★에 대한 "◆◆ ◆◆◆ ◆◆◆◆ ◆◆공사"의 2건으로 나누어 납품받은 후, 추정가격 20백만 원 이하의 2건으로 분할 발주하여 ○○과로 계약 요청 하였고, ○○과에서는 ●●●●●과의 요청대로 아래 [표 1]과 같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1] ◇◇ ◇◇◇ ◇◇◇◇ ◇◇공사 분할 수의계약 현황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방법	정당 계약방법
합 계			30,893		
◇◇ ◇◇◇ ◇◇◇◇ ◇◇공사	㈜□□□	2020. 5. 22.	15,646	1인 수의계약	2인 견적 전자 수의계약
◆◆ ◆◆◆ ◆◆◆◆ ◆◆공사	"	2020. 5. 22.	15,247	"	

2. △△△△△ △△ △△공사 및 ▽▽▽▽▽ ▽▽▽▽ ▽▽ 사업의 경우

의성군 ◇◇◇에서는 △△△△△ △△ △△공사와 ▽▽▽▽▽ ▽▽▽▽ ▽▽ 사업을 시행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 △△공사를 추진하면서 “◁◁ ◁◁”와 “◀◀◀◀ ◀◀”로 사업량을 분할하였고, ▽▽▽▽▽ ▽▽▽▽ ▽▽ 사업에 대하여도 “▷▷▷”과 “▶▶▶”으로 사업량을 나누고 시기적으로 분할하는 등, 2인 견적 전자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할 사업을 추정가격 20백만 원 이하의 2건으로 각각 분할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 분할 수의계약 현황

계 약 명	업 체 명	계약일자	계약금액 (천원)	계약방법	정당 계약방법
합 계			77,455		
△△△△△ △△ △△공사	■■■■(주)	2018. 6. 19.	20,369	1인 수의계약	2인 견적 전자 수의계약
▲▲▲▲▲ ▲▲▲▲ ▲▲공사	“	2018. 6. 19.	20,614	“	
▽▽▽▽▽ ▽▽▽▽ ▽▽ (▶▶▶)	▼▼	2020. 4. 17.	18,600	1인 수의계약	2인 견적 전자 수의계약
▽▽▽▽▽ ▽▽▽▽ ▽▽ (▷▷▷)	“	2020. 6. 11.	17,872	“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의성군 ○○과에서는 관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허가·신고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처분이 완료될 때 까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1. 배출허용기준 적용 부적정

「물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관련 [별표13] 2. 항목별 배출허용기준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도법」제28조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의성군 ○○과에서는 폐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지 않고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폐수수질을 관리할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8] 폐수 시료채취를 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하였다.

---

8) ㈜●●●●은 2018.9.21.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인 2013.4.24.폐수배출시설을 신고한 사업장으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의성군 ◎◎◎◎◎◎◎에서는 허가 요청이 있다하더라도 용량, 폐수오염도 등으로 처리를 할 수 없는 실정

그 결과 ㈜●●●●의 최근 3년간(2018. 12. 3.부터 2020. 8. 5.까지) 총 3회의 수질 시험검사성적서에 대해 적정하게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아래 [표 1]과 같이 BOD, SS항목은 모두 초과되었고, 생태독성도 1건이 초과되어 3년 모두 개선명령을 하여 개선이행 완료 때까지 배출부과금[9]을을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개선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총대장균군수는 검사항목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

[표 1] ㈜●●●● 수질기준 시험성적서

항목		적정 적용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질기준)	부적정 적용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시험성적서 결과		
				'20.8.5.	'19.12.20.	'18.12.3.
검사항목	BOD	10이하	30이하	14.6	18.4	48.3
	COD	40이하	40이하	16.7	7.9	36
	SS	10이하	30이하	12.4	12	50.3
	T-N	40이하	60이하	2.904	0.835	4.488
	T-P	4이하	8이하	0.365	0.043	0.365
	총대장균군수	3,000이하	-	미검사	미검사	미검사
	생태독성	1이하	2이하	0	1.6	0
실제처분				없음	없음	개선명령
적정처분				"개선명령" "배출부과금부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부과"	"개선명령" "배출부과금부과"

2.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행정처분 사업장 사후관리 소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2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처분한 사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 이행 완료 시까지 처분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행상태가 부실하거나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9) 배출부과금을 책정할 수 없는 사유는 개선명령이행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로 개선명령이 이루어지지 않아 부과금을 책정할 수 없음

따라서 의성군 ○○과에서는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한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이행사항을 사후관리 하여야 했다.

그러나 위 부서에서는 [표 2]와 같이 행정처분 후 최초확인 및 최종확인의 이행확인절차를 확인할 수 없거나 지연하는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2] 행정처분 후 사후관리

사업장명	행정처분명	처분기간	이행확인		
			최초확인 (처분일로부터 2일이내)	최종확인	
				기 준	현장확인일
㈜◇◇◇◇	영업정지	2018.12.7.~ 2019.1.6.	×	처분종료일	2019.1.4
㈜◇◇◇◇	영업정지	2020.4.28.~ 2020.8.27.	×	처분종료일 이전3일이내 *3회이상 점검	2020.8.28
◆◆◆◆◆◆◆◆◆◆	영업정지	2019.4.16.~ 2019.5.15.	×	처분종료일	2019.5.17
㈜◇◇◇◇	영업정지	2019.5.24.~ 2019.6.23.	×	처분종료일	2019.6.5. 2019.6.20
◆◆◆◆◆◆◆◆◆◆	영업정지	2019.11.15. ~2019.12.14.	×	처분종료일	2019.12.16

그 결과 법령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위반 사업장이 처분사항을 이행하는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3.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 확인서 관리 소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점검기관은 확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에 발급현황, 분실 및 파기현황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확인서를 분실하였거나 파기하고자 할 때에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성군 ○○과에서는 2019. 5. 17.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발급된 미사용 확인서를 폐기하면서 군수의 결재를 받지 아니하고 ○○과장 전결로 폐기하는 등 시료채취 확인서와 위반확인서 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그 결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규정을 위반하여 시료채취확인서 및 위반확인서 관리 부실을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어촌형 승마시설 목적 농지전용 허가 부적정**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의성군 ○○과에서는 2020. 7. 1. 아래 [표 1]과 같이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목적으로 한 농지전용을 허가하였다.

[표 1] ●●면 ◎◎리 농어촌형 승마시설 목적 농지전용 허가 현황(2020. 7. 1.)

농지 소재지			지목	전용면적 (㎡)	용도구분	전용 목적	비고
읍면	리	지번					
	합계			2,970			
●●면	◎◎리	ㄱ	전	2,093	농업보호구역 (농림지역)	농어촌형 승마시설	전용자 : BA(●●면)
●●면	◎◎리	ㄴ	전	877	농업보호구역 (농림지역)	농어촌형 승마시설	

「농지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관련 [별표 2의2]에 따르면 농업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토지이용행위로 「말산업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3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르면 해당 농지의 전용으로 인하여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참작할 때 전용하려는 농지를

계속하여 보전할 필요성이 크지 아니할 것을 농지전용 허가 심사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의성군 ○○과에서는 2020. 6. 23. BA의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위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신청 필지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전용 등 농지잠식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전용하가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농어촌형 승마시설을 위한 ◎◎리 ㄱ, ㄴ 농지전용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시, 현장 확인으로 신청한 필지 외에 ㄷ(전), ㄹ(전)번지의 이용 없이는 승마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어려워 향후 연쇄적인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청한 내역대로 허가해 주어 감사일(2021. 4. 27.) 현재 농업보호구역 내에서 아래 [표 2]와 같이 제한면적인 3,000㎡를 초과하여 농어촌형 승마시설로 이용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표 2] 실제 승마시설로 사용중인 농지 현황

농지 소재지			지목	전용면적(㎡)	용도구분	비 고
읍면	리	지번				
	합계			3,745		
●●면	◎◎리	ㄱ	전	2,093	농업보호구역 (농림지역)	농지전용 허가 완료
●●면	◎◎리	ㄴ	전	877	농업보호구역 (농림지역)	농지전용 허가 완료
●●면	◎◎리	ㄷ	전	260	농업보호구역 (농림지역)	허가 없이 승마시설로 이용
●●면	◎◎리	ㄹ	전	515	농업보호구역 (농림지역)	허가 없이 승마시설로 이용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승마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2개 필지에 대해 농지로 원상회복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게임산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부적정 등**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의성군 ○○○○과에서는「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게임제공업 등에 대한 신고처리, 지도·감독,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미이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의 청소년 출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등이 청소년 출입시간을 지키지 아니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따라 10일간의 영업정지(1차 위반)를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게임제공업자가 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그런데 의성군 ○○○○과에서는 의성경찰서로부터 2017. 11. 18. 01:20 “●●●●●”이 청소년 출입이 불가한 심야시간에 청소년(17세) 2명에게 인터넷 게임을 제공한 사실을 아래 [표 1]과 같이 공문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10일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했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

[표 1]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 행정처분 미이행 현황

구 분	업체명	소재지	적발일	위반사항	비고
의성경찰서 ◎◎◎◎◎◎과 -6420(2017.11.20)	●●●●●	의성군 ---	'17. 11. 18. 01:20	청소년 출입이 불가한 시간에(11.17. 22:00~11.18. 01:20) 청소년(17세) 2명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	경찰 통보 접수일 '17.11.21

2. 게임산업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부적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에 따르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일간 영업정지(1차 위반) 처분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8조 3호 및 시행령 제16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경품 지급기준시 소비자판매가격이 5천 원 이내의 것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반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5]에 따라 30일간 영업정지(1차 위반)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규칙 [별표 5]에 따르면 둘 이상의 위반행위시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그 위반행위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가장 중한 정지처분기간에 나머지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6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제공게임물 변경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0일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별표 4]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의성경찰서에서 2018. 4. 3. 19:00 ◇◇◇◇ 등 2개 청소년게임제공업소에 대한 관련 법령위반 사실을 적발하여 의성군에 통보하였는데, 통보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 [표 2]와 같이 2개 업소 모두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자들에게 제공” 및 “경품 지급기준 위반(경품단가 5천원 초과한 14천 원~26천 원의 경품지급)” 등이 적발되어, 각 업소당 위반행위가 2건 이상에 해당되었다.

이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규정이 모두 30일 영업정지에 해당됨에 따라, 의성군 ○○○○과에서는 업소별로 각 위반행위들을 병합 후 산정하여 업소당 각각 45일의 영업정지를 처분해야하는데도, 오히려 감경[10]하여 업소당 각각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또한 2개 업소 모두 제공게임물 등 중요사항 변경 후, 신고 없이 운영하여 적발되었는데도, 각 업소당 과태료(100만 원 이하)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 2] 게임산업법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등 내역

위반업소	위 반 사 항	위반사항별 법적 처분기준	**의성군 행정처분**	비 고
2개업소 (◇◇◇◇, ◆◆◆◆◆)	1)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이용자에게 제공	영업정지 30일	**없음**	1),2) 위반사항 병합·산정하여 업소당 45일 영업정지 해야함
	2) 경품 지급기준(단가) 위반	영업정지 30일	**영업정지 15일** (1/2 감경)	
	3) 제공게임물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20일내 신고없이 운영	과태료 100만원 및 경고	**구두경고**	

※ 2개 업소 모두 동일하게 위반사항(3건) 적발된 후 동일하게 처분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② 제공게임물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20일 내 신고 없이 운영하여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의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0) 시행규칙 별표5 바) -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시 1/2 범위내 감경가능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지붕위 전기(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의성군 ○○과에서는 2017년 11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184건의 지붕위 전기(태양광)발전사업을 허가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르면 ①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 ②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 150톤 이하, 부피 1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과-11795(2015.11.05.)호, 경상북도 ◎◎◎◎◎과-20096(2015.11.09.)호「건축물 옥상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설치지침 시달」에 따르면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의성군 ○○과에서는 184건의 지붕위 전기(태양광)발전사업 허가를 하였고, 허가 후 공사시행 전 검토한 결과 경미한 행위 면적(도시지역 50㎡이하, 도시지역외 지역 150㎡이하)을 초과 하였는데도 아래 [표]와 같이 31건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이행하지 않았다.

[표] 전기발전(태양광)사업 개발행위허가 미이행 현황

연번	허가번호	상호	설치위치	설치 면적	설비 용량	태양광발전 허 가 일	개발행위 허가여부	용도지역
1	-	-	-	177	30.24	17.12.22	부	도시지역
2	-	-	-	84	14.28	18.02.21	부	도시지역
3	-	-	-	1,491	95.76	18.04.16	부	계획관리
4	-	-	-	1,154	199.29	18.05.31	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5	-	-	-	187	32.40	18.06.01	부	농림지역
6	-	-	-	5,425	997.92	18.06.25	부	계획관리
7	-	-	-	1,053	98.50	18.06.26	부	농림지역
8	-	-	-	495	70.20	18.06.27	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9	-	-	-	673	99.36	18.08.20	부	계획관리
10	-	-	-	3,356	399.96	18.09.04	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11	-	-	-	64	11.04	18.12.05	부	도시지역
12	-	-	-	164	29.93	19.01.07	부	농림지역
13	-	-	-	428	48.16	19.01.09	부	도시지역
14	-	-	-	374	75.68	19.01.09	부	도시지역
15	-	-	-	505	96.72	19.01.15	부	도시지역
16	-	-	-	1,860	267.15	19.03.07	부	계획관리
17	-	-	-	100	19.98	19.04.10	부	도시지역

연번	허가번호	상호	설치위치	설치 면적	설비 용량	태양광발전 허 가 일	개발행위 허가여부	용도지역
18	-	-	-	692	99.36	19.05.17	부	농림지역
19	-	-	-	189	28.86	19.05.27	부	계획관리
20	-	-	-	700	99.20	19.06.04	부	계획관리
21	-	-	-	449	99.20	19.06.14	부	농림지역
22	-	-	-	1,089	99.60	19.09.05	부	계획관리
23	-	-	-	279	51.80	19.10.17	부	농림지역
24	-	-	-	1,080	214.43	19.10.17	부	지구단위 계획구역
25	-	-	-	190	36.00	19.11.04	부	농림지역
26	-	-	-	110	19.98	19.11.26.	부	도시지역
27	-	-	-	1,000	98.28	19.12.04	부	농림지역
28	-	-	-	188	32.76	19.12.31	부	계획관리
29	-	-	-	472	99.84	20.04.06	부	농림지역
30	-	-	-	532	99.84	20.04.06	부	농림지역
31	-	-	-	334	50.00	20.05.21	부	도시지역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 ●●● ●●공사 공사대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의성군에서는 [표 1]과 같이 “●●● ●●● ●●● ●●공사”를 2020. 6. 9. “◆◆◆◆ 주식회사 대표 CA”와 계약하고 2020. 6. 15. 착공하여 2021. 4. 16. 완료하였다.

[표 1] 공 사 현 황

(단위:천 원)

사 업 명	사 업 내 용	계약일	공사기간	도급액(총차)	도급자
●●● ●●● ●●● ●●공사	◎◎◎, ◇◇◇◇◇ 1,337㎡신축	2020.6.9.	2020.6.15. ~ 2021.4.16.	3,216,095	◆◆◆◆ 주식회사 CA

1. 기성검사 부적정에 따른 기성대가 과다 지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사를 위임받은 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7조 제8항에 의하면 기성대가 지급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의성군 ○○과에서는 ●●● ●●● ●●● ●●공사를 추진하면서 2020. 12. 22. 2차분 1회 공사 기성에 대해 접수 받아 검토하였다. 기성 내역서 중 ☆☆☆ ☆☆ 공사의 ★★★★ 공정은 ♤♤♤♤ 시운전 후 시공할 수 있는 공정으로 기성 준공 접수 당시에는 현장에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아 시운전이 불가능하였으며 ★★★★재는 일부만 설치된 상태였다. 따라서 공사감독관은 ★★★★재 설치 부분 금액은 기성준공에서 제외 하여야 했으나, 별도의 조치 없이 계약내용과 상이한 기성부분 감독조서를 작성하였고 기성금 26,625천 원이 과다 지급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기성검사원 처리 부적정

[표 2] 용 역 현 황

(단위:천 원)

용 역 명	사업량	계약일	용역기간	도급액	도급자
●●● ●●● ●●● ●●공사 ■■■■ ■■■ 감리용역	■■■■ ■■■감리용역 1식	2020. 6. 10.	2020. 6. 15.~ 2020. 4. 21.	11,49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8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 ●●● ●●● ●●공사 ■■■■ ■■■ 감리용역”의 계약문서 중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면 “감리원은 공사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확인필하여 의성군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상기공사의 용역감독관은 기성검사 요청이 접수될 당시 △△△△ 감리인 □□□□□□□□□에 기성부분 검사원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게 하여 의견을 제출받아야 했으나, 감리 확인 없이 2020. 12. 22. 해당 기성부분의 준공을 부적절(과지급)하게 처리하였다.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동주택 건축허가 부적정**

소 관 청 의성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주택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연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동일한 사업주체(건축주)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3억 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건축분야 기술자 1명 이상의 기술인력,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권자는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시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성군 ○○과에서는 건축주 “DA 외 1인”이 ●●면 ◎◎리에 신청한 건축허가건을 [표]와 같이 처리하였다. ●●면 ◎◎리 ㄱ, ●●면 ◎◎리 ㄴ의 허가건부터는 연간 건축하려는 공동주택 세대수가 20세대를 넘어가므로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했고,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보완 또는 반려 처분하여야 하는데도,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게 건축허가를 부당하게 수리하였다.

[표] 공동주택 허가 현황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용 도	연면적 (세대수)	허가일	허가번호
1	●●면 ◎◎리 ㄷ	DA DB	공동주택(다세대) 근린생활시설	697.72㎡ (8세대)	2020.7.31.	-
2	●●면 ◎◎리 ㄹ	DA DB	공동주택(다세대) 근린생활시설	753.22㎡ (8세대)	2020.9.18.	-
3	●●면 ◎◎리 ㄱ	DA DB	공동주택(다세대) 근린생활시설	704.56㎡ (8세대)	2020.10.15.	-
4	●●면 ◎◎리 ㄴ	DA DB	공동주택(다세대) 근린생활시설	820.36㎡ (5세대)	2021.2.16.	-

조치할 사항 의성군수는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